

영종도 국제공항 현상설계공모에 바란다

The Opnion of Youngjong-do International Airport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Project

FOCUS

金知德/(주)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Chi-Tok

좋은 작품을 얻기 위함보다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상설계 경기가 허다 한 것이 요즘의 우리 나라의 현상설계 실태이다.

우리 나라는 건축설계 경기 규준을 건축 3단체가 이미 제정해서 정부기관이나 각 단체 그리고 예상 발주처등에 이미 인쇄 배포했으나, 그 실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리고 UIA 규정등도 활자화해서 숙독하고 있으나 이것도 유명무실하다.

작품 선정을 위하여 현상공모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상공모를 하는 사례가 다반사이다.

좋은 작품이나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국제적인 공항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설계 경기의 근본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설계용역의 수의계약에 대한 정치권의 특혜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즉 설계자를 선정할 목적으로 시행된 과거의 관례에서 벗어난 국제현상공모가 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성이 결여된 자체내 위원을 포함한 설계심사위원회(JURY) 구성도 큰 문제점이다. 이점은 외국의 합작설계현상용역은 외국의 저명한 심사위원을 포함시키는 국제현상물을 꼭 지켜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나라의 경험 부족으로 설계건축사로 외국 경험건축가를 초청해야 한다면 국제공모 규정대로 외국의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현재의 풍토는 일반현상공모로 작품모집을 해도 4~5개 정도 밖에 응모를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한다. 이것은 제한된 작품 중에서 작품 선정을 하게 되니까 좋은 작품을 얻기가 힘들게 되며, 반대로 한개의 작품에 100여개의 작품을 출품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전 건축사 사무실로 볼때 너무나 엄청난 인력의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설계경기의 규준을 이미 인쇄 배포 했는데도 그 실행이 현실적으로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모든 설계경기는 건축사협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불합리한 설계경기는 협회가 나서서 심사위원 구성, 설계기간, 보상계획 등을 발주처와 조정해야 할 것이다. 심사위원을 사전에 공개하는 풍토도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 필히 있어야 할 설계경기의 기본사항인데 현상공모를 시행하는 발주 관청의 행정편의적인 전횡도 이 기회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금번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느냐? 미공개냐에 따라

응모자의 참여도가 다르고, 응모자측에서 보면 적지않은 응모 비용을 들여서라도 참여의 선택이 주워지기 때문이다.

금번 영종도 국제현상공모는 그 목적이 뚜렷하다고 본다. 이런 신국제공항의 경우 현상공모 참여자를 미리 엄선해서 본설계비중 기본설계비에 해당하는 20% 범위의 전금액을 참가자 모두에게 나눠주어야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매번 설계권만 주는 사례는 이번 현상에서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 현상 공모금은 공탁을 걸거나, 아니면 참석자에게 사전 공개를 해서 참여의 폭을 넓히는 의지를 새롭게 해야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재벌그룹의 정경유착방지, 금전결탁의 사전 방지태세도 발주관청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중에 하나이다.

최초 발주처는 심사위원을 사전에 공포해야 하는 의미를 스스로 이해한 후 공모를 해야하며, 공모기간도 너무 짧지 않게 해야 한다. 발주처의 일반통행식인 현상공모의 경우는 일반 응모자가 참여 안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없어 공모를 거치는 형식으로 이 공항현상공모를 시행한다면 안하느니만도 못하다. 더욱이 현상공모예산은 필히 사전에 확보하고 현상공모를 발주해야 한다. 실제 금번 국제현상공모에 응모하려면 경비가 최소 2억원이 소요될 것이다. 각 응모회사마다 2억원씩 소비한다면 10개회사가 참여하였을 때에는 최소 20억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공모에 드는 이 비용을 발주처에서 미리 참가예정자에게 밝히는 것도 상당히 의미있는 요건으로 판단된다. 보상문제에 대한 언급도 국제 현상설계공모에 있어서는 기본사항이다.

당선 후 Concept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실례도 과거에 많이 보아왔는데 이런 사례가 금번 공모에서는 없어야 한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설계경기는 필히 작품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하며, 제작작품 목록을 요구 조건에 따라 응모한 것을 원칙으로 해야하고 이 요구사항이외의 추가로 설계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합격선에서는 제외시키는 규칙이 세워져야 한다.

항상 최종심사를 끝낸후 왈가왈부 말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사항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현상설계공모로 가장 좋은 예가 대구박물관설계경기의 심사과정이 좋은 예로써 추천할만한 선례를 남긴 좋은 설계경기로 기억된다.

원래 설계경기는 Rule에 의하여 작품을 제출하게 하는 원칙이 고수되어야 한다. 심사위원에게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작품의 제출은 사라질 때가 되었다.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이번 국제현상공모에서는 협회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건축사들도 자존심을 살려서 제대로 시행된 설계공모가 아니라면 이에 응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응모지침 위반자는 반드시 탈락시켜야 하고 규정의 준수는 발주자의 결의에 따라서 분명히 해주어야 한다. “공정성의 결여문제”, 사전분배, 현상공모 상금의 문제, 준비위원 선정의 문제, 심사위원 선정의 문제, 작품심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심사위원의 숫자도 많을수록 어렵다. 적을수록 창의적이고 독특한 작품을 선정하게 되며 기능적인 면은 실시설계시 어느면이나 고쳐질 수 있는 것이라 보아 진다.

심사위원은 전문성이 있는 분을 선정해야하고 심사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었으면 한다.

전문성이 없는 심사위원은 자격이 없다. 이런 심사위원은 아예 선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교통부에서 밝혔듯이 현재 대한민국 건축사 사무소 개업 건축사 중에서 세계 최대 공항 건축설계 경험이 없으므로 해외에 용역사와 합동으로 설계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 심사위원도 필히 해외 심사위원이 위촉되어야 합당한 논리가 성립된다고 본다.

설계경기의 목적 또한 뚜렷해야 한다. 아이디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건축적 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주어야 한다. 작품성 위주라면 충분한 Presentation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사위원의 구성도 건축 전문가로만 구성해야 한다. 구조나 설비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심사과정에서 고려 되어야 하나, 건축전문가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판단된다. 설비나 구조의 측면으로 당락의 향방이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는 초래되지 말아야 한다.